



# 보 도 자 료



|       |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 일시 | (인터넷) 2022. 2. 8.(화) 10:00<br>(지 면) 2022. 2. 8.(화) 10:00 | 배포 일시 | 2022. 2. 7.(월) 15:30 |                    |
| 담당 부서 | 고등교육정책관<br>사립대학정책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책임자   | 과 장                  | 박준성 (044-203-6912) |
|       |  | 담당자   | 사무관                  | 장혜은 (044-203-7092) |

## 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

### 주요 내용

- 재정이 열악한 임시이사 학교법인에 대하여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
  -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신고할 때의 해당 절차와 내용을 정함
  - 초·중등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2월 8일(화), 국무회의에서 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이 심의·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- 이번 시행령 개정은 「사립학교법」 개정(2021.8.10. 공포, 2022.2.11. 시행)에 따른 후속 조치로,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.

#### ※ 「사립학교법」 (2021.8.10. 공포, 2022.2.11. 시행) 주요 개정내용

- ① 국가 등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게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
- ②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함
- ③ 초·중등학교 사무직원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함

-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를 명시하였다.
  -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들의 경우, 각종 소송 수행 시 소송비용 부담으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학교법인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.
  - 이에 교직원 인사 등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분쟁이나 임원 등이 회계 부정 또는 횡령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 등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시이사 학교법인의 조속한 정상화를 돕는다.
-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게 신고할 때, 신고 기한 및 내용을 구체화하였다.
  - 그간에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어 학교법인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도, 관할청은 해당 사실을 제 때 알 수 없어 필요한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.
  -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해당 절차 등을 구체화하였다.
    - ※ (소송절차의 개시 사실을 신고)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날 또는 소장의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의 성명·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등을 신고
    - ※ (소송절차의 완결 사실을 신고) 해당 심급의 종국판결 선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
- 초·중등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였다.
  - 임용권자는 채용분야,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 마감일 20일 전까지 시도교육청 및 학교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, 채용하려는 직무분야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형을 실시하도록 하여 사무직원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.

-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보다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,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고 밝혔다.

【붙임】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 대비표

| 현행  | 개정안   |
|---|---|
| <p>제6조(정관보충의 절차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공고는 전국을 보급 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되, 3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       | <p>제6조(정관보충의 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3회 이상 게재하거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10조(임시이사의 선임청구)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교육부장관에게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10조(임시이사의 선임 등)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할청에 ----- 청구하려는 이해관계인은 ----- 관할청에 제출해야 -----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&lt;신설&gt;</p>   | <p>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학교법인이 교직원 인사 등</p> |

이사회 운영 관련 분쟁의 소송상대방이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소송비용

2. 학교법인이 임원 등의 회계 부정, 횡령 등으로 발생한 학교 운영의 중대한 장애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송비용

3. 학교법인이 다음 각 목의 소송의 보조 참가인이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소송비용

가. 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

나.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

제10조의6(대학평의원회의 구성)

① (생략)

② 평의원회는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.

<신설>

제10조의6(대학평의원회의 구성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의 -----.

③ 평의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각각 호선(互選)한다.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.

<신 설>

③ (생 략)

<신 설>

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⑤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12조의2(기본재산 소송에 관한

신고)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개시 사실을 신고하려는 학교법인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날 또는 소장의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.

1. 당사자의 성명·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
2.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(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
3. 청구취지 및 이유
4. 사건의 표시
5. 관할 법원

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완결 사실을 신고하려는 학교법인은 해당 심급의 종국판결 선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.



하여야 한다.

제25조의4(징계의 감경기준) ①  
(생략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.

1. 2. (생략)

3. 법 제66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

4. ~ 11. (생략)

③·④ (생략)

제27조(보직 등 관리의 원칙) ①  
(생략)

② 법 제66조의6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.

1. (생략)

<신설>

2. 3. (생략)

<신설>

해야 ----.

제25조의4(징계의 감경기준) ①  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5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-----

4. ~ 11. (현행과 같음)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27조(보직 등 관리의 원칙) ①  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강등: 9년

3. 4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

제27조의2(사무직원의 신규채용)

① 법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임용권자(이하 이 조에서 “사무직원임용



권자”라 한다)가 실시한다.

② 사무직원임용권자는 시·도 교육감에게 제1항에 따른 공개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③ 법 제70조의3제3항에 따라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.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공개전형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

④ 사무직원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채용분야·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 마감일 20일 전까지 시·도 교육청 및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, 실기시험,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등 채용하려는 직무분야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.

⑥ 사무직원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의 공개를 요

구할 경우에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. 이 경우 전형결과 등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직원 공개 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직원임용권자가 정한다.